##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84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전재수·송기헌·허 영

김정호 · 신영대 · 위성곤

김기표 • 이학영 • 서삼석

김동아 · 전진숙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 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

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973년 3월 23일까지"를 "1975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973년 3월 23일"을 "1975년 4월 30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			
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u>19</u>	<u>19</u>		
<u>73년 3월 23일까지</u> 월남전쟁	75년 4월 30일까지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병역법」 또는 「군인	나		
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u>1</u>	<u>1</u>		
<u>973년 3월 23일</u> 사이에 월	975년 4월 30일		
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